2023년 행복한 공예교육 운영 모집공고

「2023 행복한 공예교육」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이하 공진원)이 주관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과 협업하여 문화소외계층에 공예교육을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
각 지역의 문화소외계층과 공예가들이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단체 및 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1 사업개요

- ㅇ **사 업 명:** 2023년 행복한 공예교육
- ㅇ **사업기간:** 2023년 1월 ~ 12월(교육기간: 2023년 5월~10월 예정)
- ㅇ **사업대상:** 지역공예가 및 문화소외계층
- ㅇ **사업목적:** 지역공예가와 문화소외계층 연계 공예교육 보급으로 공예가 활동 지원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
- ㅇ **지원형태**
  - 공모로 수행단체 선정 →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인력구성 → 교육 운영
- ㅇ **지원내용**

참여대상	지원내용
운영기관	지역 내 공예가 및 공예 자원을 활용한 교육·기획프로그램 기획, 운영비 지원
공예가	공예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활동 지원 및 교육 기획 역량 강화 기회 제공
교육대상자	공예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

- ㅇ **추진체계**

구 분	역할	주요 내용
공진원	사업총괄관리	ㅇ 수행단체 공모 및 교부금 지원, 수시관리 ㅇ 프로그램 수행 관리 및 중장기 추진전략 연구
문화예술 관련 단체·기관·시설 (사업수행단체)	**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공예가 활동 지원**	**ㅇ 지역 기반 공예문화교육 사업 개발 및 운영 ㅇ 지역공예가 발굴 및 공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별 문화소외계층에 맞춤형 공예교육 제공**

2 공모 개요

- **공 모 명:** 2023 행복한 공예교육 운영
- **공모기간:** 게시일로부터 ~ 2. 24.(금), 16:00까지
- **공모대상 및 자격**
  - 6개 권역 소재(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, 경상권, 전라권, 제주도)의 공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·기관
    *6개 권역 내 운영 희망하는 세부지역 선택 가능 (동 문서 3쪽의 운영지역 참조)
  - 공예창작지원센터, 공공기관(지자체 산하 재단 등), 민간기관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), 민간 사업체, 산학협력단 등
 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여야 함(폐업·휴업 상태 지원 불가)
  - e-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등 행정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함
- **신청방법: 공진원 누리집(www.kcdf.kr) 공모신청**
- **제출서류:** ① 2023 행복한 공예교육 공모 접수서류(한글파일) 1부
  · [서식 1] 공모지원서 1부
  · [서식 2] 사업 운영 신청서 1부
  · [별첨 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· [별첨 2]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1부
  · [별첨 3]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 사본) 1부
  ② 2023 행복한 공예교육 공모신청서(심사용, PPT파일) 1부
- **심사방법:** 서류심사 → 발표심사
- **온라인 사업설명회:** 2월 2주차 예정
  ※ 구글폼 사전 접수 : https://forms.gle/MRaNefypFeYbJcVq8
  ※ 사업설명회 일정 확정 후 개별 안내문 송부 예정
  ※ 정확한 정보 기입으로 확정 안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

3 공모 세부 내용

- **공모내용: 권역 소재 공예가와 문화소외계층 연계한 일반교육 및 기획프로그램 관리 운영할 수행단체 모집**
  - 6개 권역별 공예가와 문화소외계층 협력 프로젝트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획·운영할 수행단체 모집
  - **(필수)** 교육프로그램 운영: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예가의 자율 교육프로그램 기획
  - **(선택)** 기획프로그램 운영: 공예문화 확산 및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 특장점을 반영하여 자율 기획
    ·기획프로그램 예시 : 동 문서 4쪽 예시 참조

○ **수행단체 지원내용**

- **(지원금액)** 1개 지역당 최대 2억원 지원
- **(지원금액 사용범위)** 사업 내 행정인력 및 기획자 인건비, 프로그램(일반교육 및 기획프로그램) 운영비(공예가 인건비, 교육 운영비, 재료비 포함),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
- **(유의사항)**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. 정확한 지원 예산은 공진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예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**공모 신청 및 절차**

확인	① 권역선택	② 사업운영방안 수립	③ 세부 운영계획 작성	제출
공모 안내문 필독 ▶	신청단체는 1개 권역 선택 (활동 지역 최대 3개 선택 가능) ▶	○ 전체 사업 운영방안 – 사업운영 계획 수립 ○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– 인력 운영 계획(공예가, 참여자) – 시설(기관) 모집 계획 ○ 기획프로그램 운영방안 – 기획 목표 및 유형 제시 – 기획프로그램 운영 계획 ▶	공모 지침 준용하여 세부 운영 계획 작성 ▶	공모 신청

○ **절차별 세부내용**

① 운영지역 선택

- 권역 : 수도권, 강원권, 충청권, 경상권, 전라권, 제주도

※ 6개 권역별 세부 지역 분류 아래 권역별 세부지역 분류표 참조

권역별 세부 지역 분류

권역	세부지역	권역	세부지역
수도권	서울, 인천, 경기	경상권	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
강원권	강원도 내 지역	전라권	광주, 전북, 전남
충청권	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	제주도	제주도 내 지역

- 신청단체는 주요 활동 지역(특별시, 광역시, 도(남도·북도)) 최소 1개 ~ 최대 3개 선택 가능

②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

- **(기본방향)** 공예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공예가-문화소외계층 협력 교육프로그램 기획
- **(활동유형)**
  - · 기초활동: 공예실습, 결과물 제작 활동 등 연속성을 가진 공예품 창작활동
  - · 심화활동: 기초활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창작, 상품 제작 및 판매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공예 관련 심화활동

- **(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기획)** 신청하는 권역별로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공예가와 공예교육 수요가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리스트업하여 팀당 자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
- **(인력구성 및 교육시간)**
  · 수행단체가 관할하는 권역별 프로그램 최대 15개 운영(기획프로그램 운영 개수 미포함), 프로그램당 참여공예가 최소 2명 ~ 최대 6명 구성
  · 프로그램당 참여하는 소외계층 15명 이내 *프로그램별 교육참여자 중복 불가
  · 프로그램당 최소 30시간 운영 필수 *회당 교육시간은 자율구성
- **(지원내용)** 공예교육을 위한 1개팀당 평균 1천만원 예산 지원
  · 1천만원 내 공예가 인건비, 재료비, 그 외 수업 운영에 필요한 일체 운영비 및 여비 포함. 단,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예산 가감 가능
  · 프로그램의 예산 편성은 공진원 예산지침 규정에 따라야 함
- **(수행단체 의무사항)**
  · 1개 프로그램 평균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을 공예가 팀에 지원
    * 프로그램은 1천만원 내외에서 강사 인건비, 재료비, 프로그램 운영비, 여비 등 지침에 따라 자율 구성
  · 수행단체는 관리하는 프로그램팀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 운영비 지출이 공모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예산 관리하여야 함
  · 동 교육사업을 위한 행정 전담 인력구성
  · 예산 편성 시 [붙임1] 2023 예산 편성 기준 안내(동 문서 11쪽) 참조

③ 기획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

※ 기획프로그램 운영은 선택 사항으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

- **(기본방향)** 지역 내 공예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자율 프로젝트 기획
- **(활동유형)** 공예가 역량 강화 워크숍, 지역 공예인 네트워크 조성 활동, 세미나 등 공예 문화확산 및 지역 내 커뮤니티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
- **(구성 및 내용 기획)** 수행단체에서 지역의 특장점을 반영하여 자율 기획
  ·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인력구성 및 시간 등은 자유롭게 기획
    * 운영 예산은 지원금 총액의 10%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  · 예산 편성은 공진원 예산지침 규정에 따라야 함
  · 과도한 예산 편성 시 공진원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

[참고자료] 공예교육 참여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 예시 및 강사 구성 요건

[참고1] 문화소외계층 예시

구분	대상
경제적 취약계층	저소득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등
사회적 취약계층	장애인, 고령자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, 소아병동환자 등
지리적 취약계층	읍·면·동·도서(섬)·산간벽지 주민 등
특수 취약계층	새터민, 교정시설 수용자, 군인, 노동취약계층 등

[참고2] 공예강사 자격요건

대상자	자격요건 (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)
공예분야 주강사	가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했으며 만료되지 않은 자 나. 사업자등록 5년 이상인 사업자 다. 공진원에서 선정된 공예창작센터의 등록 공예가
공예분야 보조강사	가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했으며 만료되지 않은 자 나. 사업자등록 2년 이상인 사업자 다. 공진원에서 선정된 공예창작센터의 등록 공예가 라. 공예관련 활동 증빙 -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전시 및 공예 관련 학위 증빙
그 외 보조강사	공예분야 주강사인 팀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 강사 및 사회복지 분야 활동 강사 팀 구성 가능 ※ 단 해당 경력의 증빙 필요

※ 인력 구성 유의사항

-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전업 대학원생 응모 불가
- 상기 자격 요건 외 활동 증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가능

4 공모 접수

○ **접수기간:** 게시일 ~ 2. 24.(금) 16:00까지

○ **접수방법**

- 공진원 공식 누리집(https://www.kcdf.or.kr/) → 사업공모 페이지 → 해당 공고문 하단 '사업공모 신청' (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)

  ※ 우편/방문 접수 불가, 접수서류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- 공모명: **2023 행복한 공예교육 운영**

  ※ 사업공모 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양식 작성 후 제출

  ※ 타 사업의 양식 제출 시 지원사업을 특정할 수 없어 부득이 심사 제외함

○ **시스템 시간 기준 2023.2.24.(금) 16:00:00까지 제출된 건만 접수 완료로 인정**

- 경로: 공진원 누리집 > 알림소식 > 사업공모 > 2023 행복한 공예교육 운영
- 반드시 지정 접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등 절대 불가
- 공고 페이지 내 첨부파일 '[붙임2] 2023 행복한 공예교육 공모 접수서류(hwp), [붙임3] 2023 행복한 공예교육 공모신청서(pptx)' 양식 작성
-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트래픽 초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다수의 전화 문의로 시스템 오류 및 지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사업 신청을 미리 완료할 것
- 공모 접수서류 및 공모신청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
- 첨부파일 누락, 오류 사항에 대해 공진원 별도 안내 불가. 해당 내용 발견 시 심사 제외

○ **접수절차**

공진원 누리집 가입/로그인 www.kcdf.kr	▶	사업 공모 2023 행복한 공예교육 운영	▶	**공모신청서 작성** *첨부파일	▶	**제출** '사업신청'버튼 반드시 클릭

○ **접수 전 필수 확인사항**

- 신청단체 정보 확인 : 단체 정보(단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)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입력. 기존 가입 단체의 경우, 기입력된 정보의 변경이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 변경이 완료된 이후 공모 신청하여야 함

  ※ 공모선정 이후 e-나라도움(국가보조금시스템)을 통해 교부 및 사용

  ※ 단체정보(공모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, e-나라도움, 국세청)가 일치하도록 작성

5 심사 및 선정

○ 심사대상: 공모 지원 시스템에 최종 제출 완료된 단체·기관 공모신청서

○ 심사기간: 3월 2주 ~ 3월 4주 (서류심사 → 발표심사)

- 발표심사 해당 단체는 사전 안내 예정

○ 심사방법: 심사 기준에 따른 서류 및 발표심사

○ 심사위원: 공예 및 교육관련 전문가 7인 내외 구성

○ 선정기준: 수행단체의 역량, 운영계획, 예산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선정결과: 2023년 3월 5주 이내 공고 예정

<심사영역 및 배점>

심사영역	심사내용	배점
사업 이해도	· **사업 이해도** - 사업목표의 적합성 - 교육시설 및 참여 대상에 대한 이해 · **사업 계획의 타당성** - 사업목표와 세부 운영계획 간 연관성	20점
프로젝트 운영 역량	· **공예 교육에 대한 이해도** · **프로젝트 운영 방안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** - 단계별 사업 수립의 체계성 - 인력 및 대상자 구성 계획의 구체성 · **교육프로그램의 기획력** - 교육시설 및 대상의 특성 반영도 -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목적의 적절성 - 공예 장르 특성에 따른 운영 구성의 적절성 · **기획프로그램의 기획력** -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력 -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목적의 적절성	50점
사업수행 역량	· **사업실행의 전문성** - 운영단체의 전문성 및 경력 -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: 관계자 및 인력 간 협력/소통, 교육 행정/실무관리 등 - 예산 집행 계획 타당성	30점
우대사항	· **'23 공예주간 기간(5.19~28) 포함 교육 운영 가능 단체 우대** - 공예주간 참가 가능한 확정 기획내용 1개 이상 제시 필수	
총 합계		100점

○ 심의일정

신청서 접수	▶	서류심사	▶	발표심사	▶	선정발표
게시일 ~ 02.24.		3월 2주		3월 4주		3월 5주 이내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단계별 심의 결과는 누리집 공지 예정

※ 발표심사의 경우,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·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서(PPT)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

6 유의사항

1)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

○ 공모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으로만 제출

- 접수서류(hwp) 및 공모신청서(PPT) 파일은 PDF로 변환 후 제출
- 공모 접수서류 내 직인 및 서명 날인은 전자 및 스캔, 이미지 파일로 모두 가능하나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

- 스캔본 등 신청서 내 이미지 사라짐 및 깨짐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○ 공모신청 내용 작성

- 단체정보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등)는 신청서 내 기재 내용과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공진원 공식 누리집 및 e-나라도움 정보와 일치해야 함

 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최신화하여 제출

- 공모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주시고, 제공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신청서 제출 전 기재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. 기재나 표기 오류, 정보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
- 작성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선정 확정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

○ 공모신청서 작성 시 주요 오류사항

-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 누락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누락 및 문서 내 서명 누락, 동의 여부 미체크
-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확약서 내 동의 여부 미체크 및 서류 제출 누락

2) 심의 제외 대상

○ 타 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시

○ 공모신청서 내 단체 직인 누락(대표자 개인 도장 날인 포함) 시

○ 활동 가능 지역을 세부 행정구역(특·광역시, 도(남도·북도) 외 시·구·군·읍면)으로 작성 시

○ 필수서류 누락 시 * [서식 1~2], [별첨1~3] 총 5종
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인력 1인 이상 제출 필요

○ 주요 정보 불일치 시

- 단체정보(단체명·대표자명·사업자등록번호) 관련

▲공모신청서, ▲사업자등록증 간 상호일치 필요, ▲e-나라도움 신청정보(선정 후 확인)

○ 부정수급 단체

-「보조금법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,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재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
○ (조건부선정) 공모 심사 시점 기준, 보조금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형사 조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, “심사 시 해당 사실관계 안내” 예정

- 지원 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업 혹은 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공모에 지원 불가. 선정 이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교육 운영 대상 시설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예 교육 강사 파견 및 지원금 사용 불가. 선정 이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3) 사업 운영 유의사항

○ 예산편성은 공진원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음

○ 선정된 단체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공진원과 진행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

○ 사업 운영사항은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공진원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세부 실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

○ 추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*해야 하며, 본 계획(안)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

* 예) 원활한 행사를 위한 보험 가입,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사전 동의서 작성 등

○ 예산계획 수립 시, 사업참여 인력 관련 비용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

○ 공모 선정 이후 제출 내용상의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공진원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결격 여부가 밝혀질 경우,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됨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- 지원이 확정된 단체가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
-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
- 정부 및 공진원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
- 지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
-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
- 사업 취지 또는 목적 기준에 심각하게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
-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에 비협조 또는 불참석하는 경우

○ 선정된 이후 지원금의 교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시스템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배치 필수이며, 관리 불찰로 인한 모든 책임은 피지원 기관에 있음

○ 공진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,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, 성희롱 신고자,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함

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◦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◦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[붙임1] 2023 예산 편성 기준 안내

※ 항목별 세부 예산지침 및 집행기준은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예정
※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,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안내에 따라 교부 시 제출
※ 지자체 산하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경우 내부인력에 대한 행정인력 인건비 중복지급 불가
※ 교육프로그램당 평균 1천만원 지원으로 편성
– 1천만원 내 인건비, 재료비, 교통비 등 사용 가능하며 세부 산출은 공모 확정 이후 아래의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 확인

목	세목	편성 가능 항목	편성 유의 사항
인건비 ※ 예산의 30% 미만 책정	기타직 보수	행정인력 인건비	- 행정인력: 월 최대 2,500,000원 *9개월
	일용 임금	기획자 인건비	- 교육 및 기획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력
		보조인력 인건비	- 행사 등 단기로 활용하는 인력 - 1일 8만원 기준 산정
운영비	일반수용비	교육프로그램 운영비 ※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예산 차등 책정 권장	- 1개 팀별 평균 10,000,000원 지원 프로그램 당 인건비/재료비/여비/교통비 등 편성하여 운영 * 팀별 산출은 공모 선정 이후 확인 - 공예가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아래 기준 의무적으로 준용 (필수) 주강사: 최대 250,000원/회차(3시간) (필수) 보조강사: 150,000원/회차(3시간)
		기획프로그램 운영비 ※ 총 예산의 10% 초과 불가	-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 편성 - 공진원의 예산지침 범위 내 책정 - 전문가 활용비 책정 가능 · 워크숍, 세미나 등을 위한 전문가 활용 가능 · 내부 참여 인력은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
		기타 진행비	- 회계검사 수수료 - 홍보물 제작비(현수막, 포스터, 리플렛 등) -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
	공공요금 및 제세	자료 발송 및 공공요금	- 교육재료 등 우편 및 택배 발송비 - 외부활동 및 참여자 이동에 따른 보험료
	임차료	재료 및 시설 임차비	- 소모성 재료가 아닌 품목은 임차 진행 (기자재 등) -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영상 촬영 등에 따른 기자재 임차비 - 교육 시설 내 공간 임차비용 필요 시 편성 가능 ※ 공예강사의 개인 공방 및 작업실 등 내부인력 보유공간 임차비 지원 불가 - 시설-단체 사전워크숍, 역량강화워크숍, 결과발표회 이외의 내부 회의공간 임차비 지원 불가
	복리후생비	사업자 부담금	- 인건비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
여비	국내 여비	사업 관련 출장비	- 시설-단체 사전워크숍, 공진원 교육 참석용으로만 집행 가능 - 교통비, 일비, 식비 지급 ※공예가 중복지급 불가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다과 및 회의식비	- 수행단체 및 내부인력에 대한 회의 다과 및 식비 ※ 회의록 첨부 필수 - 교육 및 기획프로그램 참여자 다과

예산 편성 기준 내 집행 불가 사항		
항목	세부항목	내 용
인건비	행정인력, 공예가 인건비	- 지자체 산하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경우 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- 수업 준비 활동, 회의, 내부인력 간 네트워킹 등 사업 내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중복지급 불가 - 모의수업과 같은 교육 준비에 포함되는 활동은 인건비 책정 불가 ※ 지급내역서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 입금 원칙 ※ 원천세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
	일용임금	- 동일인에 행정인력 인건비 및 전문가활용비, 강사비 등 사례비와 중복지급 불가 ※ 원천세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
운영비	프로그램 재료비	- 교육 참여 공예 예술가의 작품 구입 불가 - 자산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(비소모성 물품)은 대여 권장
	전문가 활용비	- 행정인력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-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경우 동일 단체, 기관의 내부인력에 대해 지급 불가 - 교육프로그램 회차 내 전문가(특강강사) 활용비 지급 불가(참여인력 인건비 적용)
	기타 진행비	- 비소모성 물품 구입 불가 - (홍보물제작비)교육진행과 무관한 시혜성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 제작 불가
	공공요금 및 제세	- 산출 내역 증빙 불가 시 집행 불가
	임차료	- (재료 임차비) 소모성 물품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불가 - (대관료) 학교시설, 정치 및 종교시설, 사설학원 및 가정집 불가
여비	대관료	- 대관료 산출내역 증빙 불가 시 사용 불가 - 교육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대관료 집행 불가(예: 유흥, 레저 시설 등)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- (프로그램 간식비) 프로그램 내부인력만이 참여하는 교육 운영 일자 사용 불가
		- (참여인력 회의식비) 회의 참여 인원 및 상세 내역 증빙 불가 시 집행 불가

보조금 사용 인정되지 않는 경비	
사용불가 항목	**세부내역**
선정단체 대표자와 가족 간 거래	교육운영 단체·기관 임직원 및 강사진, 기획자, 전문인력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, 계열관계에 있는 단체와는 물품 제작 및 구입,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인쇄, 공간 유료 대관 등 일체 거래할 수 없음 (회계검사 시 환수 조치)
일상적인 운영경비	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 단체운영경비
자본적 경비	-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
행사 답사비 등 비용	-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
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	- 상금, 상금 심사비 등
기타 사항	-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-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-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
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	- 유흥업종: 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- 위생업종: 이 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 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- 레저업종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 - 사행업종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 - 기타업종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[붙임 2]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 유의사항

1. 공예가 구성 기준 및 지침

○ 지역별 최대 60명의 공예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팀 구성

- 팀당 2~6명 구성하되 최대 6명 넘을 수 없으며, 수행단체가 운영하는 1개 권역당 최대 60명 공예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팀 구성
- 팀당 주/보조강사 인원 편성은 수행단체에서 자율 구성

○ 교육프로그램 1팀당 최소 30시간 교육 운영을 기본으로 함

- 프로그램은 수행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, 동일 공예가가 다수의 팀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

○ 공예가 인건비 예산 지원 지침

-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예가를 주강사/보조강사로 구분하여 인건비 책정
- 인건비 지급 기준 *공예강사 인건비 단체에서 임의 변경 불가

▸주강사 1회(3시간) 인건비 250,000원 / ▸보조강사 1회(3시간기준) 150,000원

※ 교육시간은 현장교육과 관련된 활동(교육 준비, 교육활동, 마무리 등)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

2. 교육프로그램 운영

○ **(교육기간)** 2023년 5월 ~ 10월

○ **(교육규모)** 대상자 및 교육내용에 따라 최소 운영 회차 및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자율 편성

○ 교육프로그램 당 문화소외계층 15명 내외 규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

○ 1일 최대 2회 연속 회차 운영 가능

※ 1일 2회 운영 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되, 동일 교육내용 수업 시 다른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

○ 해당 공모사업의 목적에 따라 일회성 체험교육을 지양하며 1개 교육프로그램 동일 대상자들에게 최소 30시간 운영

○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/비대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기획 가능

○ 교육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연구 활동은 교육 회차로 인정되지 않으며,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사전 콘텐츠 제작 활동을 교육 회차로 인정함

○ 교육대상자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대상자 모집 및 참여 기준은 수행단체가 수립하여 공예가와 협의 후 진행